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다.

온 국민을 큰 슬픔과 자괴감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880여일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울분을 가슴에 안고 아직도 분향소에서 그리고 진도에서 배회하고 있다. 참사의 실질적인 원인규명과 갖가지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머지않아 세월호가 인양되면 참사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 또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9월말로 활동이 종료되어 지면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선체조사는 전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참사 발생 이후 어렵게 유가족들의 애끓는 호소와 뜻을 같이하는 온 국민의 합의로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진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책임이며, 세월호 참사로 통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의혹을 밝힐 주요단서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